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10579 판결 [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10579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6. 15 선고 2015가단1190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 선고 2018. 1.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6. 15. 선고 2015가단119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전 1851m²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0, 7,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근린생활시설 주택 18m²,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6, 41, 42,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지상 창고 8m²,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지상 욕조 3m², 같은 도면 표시 21, 22, 25, 24, 26,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지상 데크 8m², 같은 도면 표시 24, 26, 27, 28,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지상 수돗가 2m², 같은 도면 표시 8, 9, 32, 31, 30, 2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지상 골프연습장 11m², 같은 도면 표시 4,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 지상 철울타리 및 석축 37.99m²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4, 38, 39, 5, 40, 6, 41, 34, 20, 7, 22, 25, 29, 8, 9, 32, 10, 19, 18, 1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토지 190m²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승철

판사강선아

판사차선영

별지